간담회 자료 2

신용회복위원회 예산분담 체계 변경

1 개 요

□ '16. 9. 23일 「**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**」이 **시행**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민법 상 사단법인에서 **법정기구로 전환**

ㅇ 동 법 제75조는 금융회사 등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의무화를, 제76조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 및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**채무조정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**

→ 이에 따라 위원회 예산구조는 기존의 사단법인 회원에 대한 예산분담 체계에서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에게 징수하는 **수수료 체계**로의 **변경**이 **불가피**

< 법 제75조(신용회복지원협약) > ① 생략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1. 진흥원
2. 금융회사
3.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4.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

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④ ~ ⑤ 생략

< 법 제76조(수수료) >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1.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
2.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2 현 행

□ 현행 예산분담금은 채권금융회사에게 송금하는 **채무변제금 송금실적을 기준으로 징수**

ㅇ 직전 회계연도 송금실적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예산분담금*을 산출하여 연초(2월)에 선납하며,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동 기간중의 실제 송금실적을 기준으로 정산(환급 또는 추납)을 실시(익년 2월)

* ① 예산분담금 = 1차 예산분담금 + 2차 예산분담금

② 1차 예산분담금 : 직전연도 ❶송금건수 비중(개별회사 송금건수 / 총 송금건수)과 ❷송금금액 비중(개별회사 송금금액 / 총 송금금액)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1차 예산분담금을 산출 → 당해 회계연도 예산액 × ❶ 또는 ❷

③ 2차 예산분담금 : 1차 예산분담금과 당해 회계연도 예산과의 차액을 1차 예산분담금 점유율에 따라 재분배 → (당해 회계연도 예산액 - 1차 예산분담금 총액) × (개별회사 1차 예산분담금 / 1차 예산분담금 총액)

3 문제점

□ 현행 위원회 예산분담기준은 다음 **5가지**의 **문제점**이 있음

❶ 금융회사별 예산분담금이 채무변제금 송금건수 비중과 송금금액 비중으로 산출 후 둘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

여신 건별 대출규모 및 인당 대출계좌 수 등에 따라 채무변제금 송금액 대비 **예산분담비율**이 **금융업권별 상이**(최저 1.93% ~ 최고 3.47%)하고,

❷ 일부 금융회사는 예산분담금 적용금액이 **송금건수 또는 송금금액 비중**으로 **산출한 금액**보다 **많은 금액**이 **적용**됨

❸ 채권매각 시 매각당사자 간 분담금 납부주체에 대한 분쟁 등으로 **분담금 납부**가 **지연**(미납)되며,

❹ 소형 채권금융회사의 경우 채무변제금은 정상 송금 중이나 주소 불명 등으로 **분담금 청구**가 **불가능**한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,

❺ 당해 회계연도에 채권매각 후 폐업(청산) 예정인 자산관리회사 등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선납 분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동 금액을 그 다음 회계연도에 전액 환급하는 구조로 인해

분담금 환급 시까지 최대 2년간 폐업(해산)을 **보류**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**선납 분담금 납부**를 **거부**하는 **사례**도 발생

⇒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**예산분담체계**를 **수수료 체계로 변경**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채권금융회사에게 채무변제금 **송금 시 분담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**함으로써 그 동안의 예산분담금 납부체계에서 발생되었던 **문제점**을 **해소**

<참고 1> '15년 채무변제금 송금액 대비 예산분담비율(금융업권별)

금융업권	예산분담비율*	금융업권	예산분담비율*
대부업	3.47%	농협/축협	2.85%
증권/투신	3.47%	새마을금고	2.70%
손해보험	3.46%	은행	2.44%
생명보험	3.43%	신협	2.35%
여신금융	3.21%	수협	2.16%
자산관리회사	3.14%	보증기관	2.13%
파산금융회사	3.00%	산림조합	1.93%
저축은행	2.85%	**전 체**	**3.00%**

* 예산분담비율 = '15년 예산분담금 정산금액 ÷ '14.12월 ~ '15.11월 중 채무변제금 송금액

<참고 2> 예산분담금 미납 현황('16. 8. 1.현재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(7월말)
미납금액	50	638	90	661	323	560

4 개선안

☐ 채권금융회사에 **채무변제금 송금 당일** 채무변제금 송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**분담수수료**를 **징수**

❶ (1안) 채무변제금 송금 시 분담수수료를 차감 후 송금

○ 다음 회계연도 예산과 채무변제금 송금 예상액 등을 기준으로 분담수수료율을 산정*하고,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변제금 송금 시 분담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

* 수수료율 산정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61조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함

< 법 제61조의 위원(15인) >

신용회복위원장(1), 전국은행연합회장(1), 생명보험협회장(1), 손해보험협회장(1), 손해보험협회장(1),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(1),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(1),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(1),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(1), 소비자보호 및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(7인)

○ 위원회는 분담수수료 징수 관련 세부내역을 업무시스템(edi.ccrs.or.kr)을 통해 채권금융회사에 제공*

* 채무변제금 송금액 100,000원 중 분담수수료 4,000원(수수료율 4% 가정)을 차감 후 96,000원을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고, 동 송금내역 조회 원장에 관련 내용을 표기

채권금융회사는 채무변제금 수령액을 100,000원으로 인식하고, 4,000원을 분담수수료로 회계처리

※ **(유사사례)** 금융결제원의 CMS(Cash Management Service) 서비스

① CMS이용기관은 출금일(D) 1일전 금융결제원에 출금관련 정보제공
② 금융결제원은 출금신청내역을 출금일(D) 당일 온라인출금
③ 금융결제원은 출금일(D)+1일에 수납 의뢰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 후 CMS이용기관 수납계좌에 입금

→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에 의뢰한 출금요청금액을 대출상환금으로 인식하고 금융결제원의 실제 입금액과 CMS수수료(비용)를 동시 기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

❷ (2안) 채무변제금을 송금 후 분담수수료를 당일 출금이체

○ 수수료율 산정은 1안과 동일하나,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변제금을 송금하는 당일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변제금 수취계좌에서 즉시 출금이체를 통해 분담수수료를 징수

○ 출금이체는 부가가치전산망(VAN)을 활용하여 일 단위로 징수하며, 동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업무시스템을 통해 채권금융회사에 제공

* 위원회는 채무변제금 송금액 100,000원을 우선 송금하고 분담수수료 4,000원(수수료율 4% 가정)을 채권금융회사의 변제금 수취계좌에서 즉시 출금이체, 업무시스템에 분담수수료 관련 내용을 표기

채권금융회사는 채무변제금 수령액을 100,000원으로 인식하고, 4,000원을 분담수수료로 회계처리

<예산분담금 체계 개선안 비교>

구분	(1안) 수수료차감 후 송금	(2안) 송금 후 수수료 출금
장점	· 수수료 수취 관련 비용 없음 · 추가회선 및 장비 불필요 · 시스템 개발기간 1~2개월 · 변제금 송금 시 즉시 수취하게 되므로 미납수수료 없음 · 수수료 관리부담 낮음	· 변제금 송금 후 출금이체까지 약 20분 소요되므로 미납수수료 발생 가능성 낮음 · 소형 금융회사도 채권원장 관리 용이
단점	· 소형 금융회사는 채권원장 관리가 곤란할 수 있음	· 수수료 수취관련 비용 연간 약 170 백만원 발생(은행 · VAN사 수수료 등) 하여 금융회사 수수료 부담 증가 · 전용회선 및 라우터 등 장비 필요 · 시스템 개발기간 3개월 · 수수료출금 실패 시 이력관리 필요 · 출금이체 관련 전 은행과의 계약필요, 채권금융회사의 출금이체 동의 필요

92.XXX.4.106 / 2016-08-31 09:57:16

5 적용방안

□ 위원회 수입예산 안정성 및 개선안의 장 · 단점 고려 시 **(1안) 채무변제금 송금 시 분담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**하는 방식으로 **분담수수료를 징수**하는 것이 적정

□ 예산분담 체계 변경안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**'17. 1월부터 적용**